



##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4.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3120(2021.4.23.)
-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30.)
-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4.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시설·활동별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검토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다.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p>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게시 및 안내</p>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p> <p>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 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p> <p>④ 마스크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p> <p>⑤ 음식섭취 금지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물,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p> <p>⑥ 손씻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p> <p>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1단계: 전석 운영 *1.5단계: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2단계: 좌석 한칸 띄어 앉도록 하기 혹은 동반자 외 한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하기</p> </div> <p>⑧ 환기하기 - 공연전후 환기(환기대장작성)</p> <p>⑨ 소독하기 -일1회이상 소독 (소독대장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p> <p>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공간수칙 적용</p>	<p>① 방역수칙 준수</p> <p>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 시설 이용하지 않기</p> <p>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 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협조 ** 성년인 친족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제외 가능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p> <p>④ 마스크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p> <p>⑤ 음식섭취 금지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p> <p>⑥ 손씻기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p> <p>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1단계: 전석 운영 *1.5단계: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2단계: 좌석 한칸 띄어 앉기 혹은 동반자 외 한칸 띄어 앉기</p> </div> <p>⑩ 기타 - 화장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p>
추가 수칙	<p>① 공연장 외부 - 공연장 밖 로비(매표, 예매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간 칸막이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p> <p>② 대중음악 등 관람시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함성, 구호, 합창)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p>	<p>① 공연장 외부 - 공연장 밖 로비(매표, 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되어 있거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워 앉기</p> <p>② 대중음악 등 관람시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함성, 구호, 합창)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에 협조</p>

-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라.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철저 관리하며 운영**

- 국공립 공연장은 민간 공연장과 동일하게 상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

3. 귀 기관에서는 방역조치사항을 각 소속기관, 공연장, 회원사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 불가능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붙임 :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사)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재)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재)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재)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재)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사)한국발레협회 회장, (사)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재단법인국립극단 예술감독,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발레STP 협동조합 이사장, (사)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중학교장, 예술의전당 사장, (재)정동극장 대표이사, 서울예술단 이사장, 국악방송 사장, 한국문화예술회관련협회장,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국립국악중학교장,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주무관 송선미 행정사무관 휴가 공연전통예술과장 전결 2021.5.3. 윤태욱

협조자

시행 공연전통예술과-2127 (2021. 5. 3.) 접수

우 03062 세종시 갈매로 388 세종청사 15동 318호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744 팩스번호 044-203-2871 / [sm79m@korea.kr](mailto:sm79m@korea.kr) / 부분공개(5)